

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성명 (명칭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(전화번호 :)		

허가 · 인가 등 신청일자							
허가 · 신고 협의번호					허가 · 신고 협의일자		
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		[] 일시납부 [] 분할납부 ※ 해당란에 √표시					
용도변경 신청내역	농지소재지	번지 외 필지					
	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	용도변경전			금회변경		
		계(㎡)	답	전	계(㎡)	답	전
	농업진흥구역						
	농업보호구역						
	농업진흥지역밖						
	계						
	용도(목적)						
	사유						
	구분	용도변경전			금회변경		
	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						
	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 표 1의3에 따른 사업장규모						
	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						

「농지법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.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, 폐수의 배출,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	수수료 :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름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

소 재 지			지번	지목	면적 (㎡)	농업진흥지 역용도구분	용도변경전		금회변경	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	용도	전용면적	용도	전용면적

처리절차

※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